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45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이기헌·허 영·조계원

박지원 • 박민규 • 한민수

임오경 • 이재강 • 김주영

윤종군 · 정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음.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의 국가는 국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날로 삼고 있음.

이에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태극기의 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태극기의 날) ① 국기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되새기고 국 기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 기의 날로 하고 태극기의 날부터 1주일을 태극기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의 날(태극기 주간을 포함한다) 취 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6. 태극기의 날</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태극기의 날) ① 국기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되새		
	기고 국기에 대한 존중과 자긍		
	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		
	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하고		
	태극기의 날부터 1주일을 태극		
	기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		
	극기의 날(태극기 주간을 포함		
	한다)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한다 <u>.</u>		